

제 1 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수립

당사자들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수립한다.

제1.2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가.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나. **협정**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라.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마.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바.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사.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아.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자. GPA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차.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세계관세기구가 채택 및 운영하고,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며, 당사자들이 그들 각자의 법에서 개정,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카. 국제통화기금이란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타. 국제통화기금협정이란 1944년 7월 22일 브레튼우즈에서 채택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을 말한다.

파.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하. 법인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거. 최빈개발도상국이란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러하게 지정되고 최빈개발도상국 범주로부터 제외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말한다.

너.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란 최빈개발도상국인 어떠한 당사자를 말한다.

더.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러.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며. **부패성 상품**이란 특히 적절한 보관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을 말한다.

버.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서.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어. **선적 전 검사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란

제18.2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터.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퍼. **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 각자의 법, 규정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노.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도. **무역원활화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모.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보.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소.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 1.3 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개발 단계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 경제동반자들을 수립하는 것

나. 특히 당사자들 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 상품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다. 당사자들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제한 및 차별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분야별 적용범위를 가진 당사자들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그리고

라. 투자 기회 그리고 당사자들 간 투자의 증진, 보호, 촉진 및 자유화를 제고할 자유롭고 촉진적이며 경쟁력 있는 역내 투자환경을 창출하는 것